싱가포르 법원의 관할권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역외 송달과 관할 근거

싱가포르에 현존하거나 관할에 복종하는 피고는 싱가포르에서 제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피고에게는 법원규칙(Rules of Court 2021) O 8 r 1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역외 송달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싱가포르와 충분한 관련성이 있고, 싱가포르가 적절한 법정지이며, 본안에 관하여 심리할 중대한 쟁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주장 가능성(good arguable case)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성은 대법원 실무지침(Supreme Court Practice Directions 2021) 제63항에 열거된 관할 근거(gateway)를 통해 인정됩니다.[1]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네 가지 관할 근거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재산에 대한 물권을 주장, 확인 또는 결정하기 위한 청구인 경우. 청구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청구원인에 근거하는 경우. 피고가 싱가포르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구가 싱가포르에서 체결되었거나, 싱가포르법이 준거법이거나, 싱가포르에서 위반된 계약에 관한 경우입니다.

적절한 법정지(forum conveniens)는 싱가포르가 수용한 *Spiliada*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증인, 증거의 소재지, 준거법, 다른 곳에서의 관련 절차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어느 법정지가 소송 심리에 명백히 더 적절한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를 묻습니다.[2] *CLM v CLN* 사건에서는 도난 자산을 보유한 거래소들이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청구가 그 자산에 대한 청구였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적절한 법정지였습니다.[3] *Janesh* 사건에서 법원은 주로 원고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된 성격이 다른 사건에서는 관할권에 관하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4]

토큰의 소재지: Cheong Jun Yoong 판결

싱가포르 소재 재산에 관한 관할 근거로 인해 법원은 토큰이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2024년 1월 Chua Lee Ming 판사가 *Cheong Jun Yoong v Three Arrows Capital* 사건에서 이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Three Arrows 내의 별도 펀드를 구성하는 가상자산이 자신과 투자자들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청산인들에게 역외 송달을 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가상자산에는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그 소재지는 지배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배는 개인키를 보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소재지(situs)는 그 사람의 거주지입니다.[5] 판사는 주소지보다 거주지를 택했습니다. 거주지가 지배가 행사되는 곳과 그 사람을 제소할 수 있는 곳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6] 사실관계상 원고와 원고가 영업에 사용한 회사가 모두 키를 지배했고 둘 다 싱가포르에 거주했으므로, 자산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상당한 주장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7] 판사는 *ByBit* 사건에서는 소재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토큰을 무체동산(chose in action)으로 보더라도 키를 지배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입니다.[8]

청산인들의 병행 청구를 심리한 BVI 법원은 강조점을 달리하여, 키의 지배자가 소유자라는 추정을 적용했습니다.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청산인들의 항소 허가를 거부하면서, 이것이 싱가포르의 접근법에서 진정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든 청구원인에 관한 관할 근거가 독립적으로 충족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9] 따라서 싱가포르의 규칙은 토큰이 그 키 보유자가 거주하는 곳에 소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결과가 따릅니다. 분쟁 대상 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산의 키를 보유한 싱가포르 거주 원고는 재산 관할 근거에 따라 외국 피고를 상대로 싱가포르에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난 토큰의 지배권을 장악한 사기범은 그 소재지를 자신이 거주하는 곳, 즉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긴 셈이므로, 피해자는 그 대신 청구원인이나 자산에 관한 관할 근거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거주지가 수탁 자산의 소재지를 정하므로, 싱가포르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수탁기관의 고객은 그 자산에 관한 청구를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관점

싱가포르 거주 수탁기관이나 싱가포르 거주 상대방이 보유한 토큰에 관해서는, 계약이 해외에서 체결되었고 피고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싱가포르에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토큰은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수탁기관과 분쟁이 있는 스위스 원고는 이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이면으로, 싱가포르 거주 키 보유자는 자기 토큰의 소재지를 함께 가지고 다닙니다. 추크로 이주하는 싱가포르 창업자는 자기수탁 토큰의 소재지를 스위스로 옮기게 됩니다. 스위스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칙이 없어 이 문제는 열려 있습니다(제D편 제IX장).

주

1. Rules of Court 2021, O 8 r 1 및 Supreme Court Practice Directions 2021, para 63. *Three Arrows Capital Ltd and others v Cheong Jun Yoong* [2024] SGHC(A) 10, [18]의 요약 참조. ↩
2. *Rickshaw Investments Ltd v Nicolai Baron von Uexkull* [2007] SGCA 10, [14]–[16]. *Spiliada Maritime Corp v Cansulex Ltd* [1987] AC 460을 적용함. ↩
3. *CLM v CLN and others* [2022] SGHC 46, [69]–[75]. ↩
4. *Janesh s/o Rajkumar v Unknown Person ("CHEFPIERRE")* [2022] SGHC 264, [27]–[30].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5. *Cheong Jun Yoong v Three Arrows Capital Ltd and others* [2024] SGHC 21, [59]–[62]. ↩
6. *Cheong Jun Yoong* [2024] SGHC 21, [63]. ↩
7. *Cheong Jun Yoong* [2024] SGHC 21, [57]. ↩
8. *Cheong Jun Yoong* [2024] SGHC 21, [64]. ↩
9. *Three Arrows Capital Ltd v Cheong Jun Yoong* [2024] SGHC(A) 10, [23]–[32].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